



汚染시켜 남주다.



金亨徹
(環境廳 計劃 調整局長)

오래전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토막,
옛날에 어떤 홀아비가 살았더라.
마누라 없는 재미(?) 한번 맛보지 못하고 자식새끼 먹여살리느라 뼈빠지게 고생고생하며 살았
더라.

그럭저럭 자식새끼들은 별탈없이 잘 자라(공해가 없어서?) 대가리가 흥부의 박보다는 크고
놀부의 박보다는 약간 작은 정도가 되었을 때, 이 홀아비 늙어 죽을 때가 되었더라.

天涯孤兒, 四顧無親될 자식새끼들을 생각하니 안토니오의 살 한파운드를 저장잡았던 샤일록보
다도 더한 노랭이 영감의 그 침침한 老眼에도 분명 하늘이 노랗게 보였더라.

그래서 재산상속을 결심, 유언준비를 하였더라.

相續者는 박대가리 셋(스트라이프와 불의 組合狀況은 기억에 없음), 재산은 살전 암말(홀아비
는 암말을 좋아한다) 열일곱마리 외에 초상치루기에 빠듯한 엽전 열닷냥이 전부. 노랭
이 영감은 살아생전 부정축재는 못 했더라.

죽어가는 홀아비, 상속자 전원집합하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연하나 장중한 어조로 이르기
를,

“애비 죽는다고 어디서 부조도 들어오지 않을테니 엽전 열닷냥으로 치루어 빚지지 않도록 하
고, 「할딱」, 말은 열일곱마리여서 균등분할 불가능하니, 「할까닥」, 큰 애가 그 반을, 둘째는 전
체의 3분의 1을, 「할딱할딱」, 셋째는 전체의 9분의 1을 갖도록 하거라. 「할까닥 할까닥」, 그리
고 상속세는 면세점 이하면 모르거니와 불연이면 포탈할 수 밖에 ... 「꼴깍」, 잠잠. ... ” (세금
포탈죄의 예비음모교사지만 벌칙조항 없음)

자식들은 흐느끼면서 애비의 유언을 이행, 부망산에 팡팡 묻었으나 삼우제도 지내기전에(祭需
錢을 남기지 않아 缺祭했는지도 모르겠음) 유산싸움으로 돌입하였더라.

큰자식의 주장은, 살아있는 말을 죽일 수는 없으니(축신법은 없었을테고 동물애호정신을 원
용하였겠지) 사사오입하여 아홉마리의 소유권을 논리정연하게 개진! 그러나 동생들은, 전체의
반을 초과함은 신성하고 엄숙한 유언에 위배된다고 반대!

한편, 둘째는 여섯마리를, 다른 한편으로 막내는 두마리를 가져야겠다고 하나 多數決로 否!
反對! 反對! 決死反對! 理由는 餘皆倣此.

싸움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박대가리들은 한겨울 늦나절 동네어귀를 어슬렁거리는 미친개
만큼이나 게저품을 입에 물었더라. 스페인의 鬪牛만큼이나 사납게 싸웠더라. 제기랄...

여기쯤 해서 救惡黨主(?)같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옛날 이야기의 定石, 그
래야 말이 된다.

어느날, 한 遁者같은 노인이 흰 수염을 배꼽계까지 드리운 채 다 늙어버틀어진 말을 타고 조

는 듯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박대거리들의 그 추악한 汚穢(오물)을 목도하였더라.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는데 그냥 지나치면 말도 않된다.

차초지중을 듣고 난 우리의 美髯(미수염)老人(노인)은 이렇게 입을 열었더라.

“내 말을 줄터이니 나누어 가지게. 그러면 첫째는 아홉마리, 둘째는 여섯마리, 셋째는 두마리를 몫으로 하게 되네.” 하면서, 손수 자기것을 포함하여 나누어 주었더라.

박대거리 셋은 좋아라고 희희낙낙, 각기 제 몫을 “이라쫓쫓”물면서 동남북으로 흩어졌더라.

박대거리들이 사라지자 이 엉터리같은 노인은 자기가 타고 온 것보다 훨씬 싼하고 기름기가 자르르한 나머지 말을 타고 어디론지 가버렸더라. 영화같으면 화면은 여기서 F.O, 곧 이어 “끝”자가 나오고 극장안은 환해지게 된다.

이 똥판지 같은 이야기를 북망산에 팡팡 묻힌 노랭이 영감이 알았더라면 화병으로 두번째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찮고 어리석기 짝이없는 이야기이나 이러한 어리석음은 그 박대거리들 만이 아니지 않을까?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일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일이다.

□ 汚染者 負擔原則

OECD(經濟協力開發機構)가 1972년에 이를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가 이를 환경법규의 기본이론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염방지 투자에 관한 지배적인 경제이론으로 개발론자들도 이를 신봉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즉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기만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감시의 눈을 피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타기할 작태를, 대개 위반사실을 몰랐다가나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부담이 커서 부득이하다거나, 심지어는 행정관서의 감시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결코 넘어지면서 “왜 다른 업체도 위반하는 곳이 술한데 하필 나만 못 살게 구느냐”하는 물귀신 같은 변명을 하면서까지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과 위 이야기중에서 유언의 신성 엄숙성을 내세워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알파한 奸智(교지)로 말 한마리도 안되는 것을 얻으려다가 뼈빠지게 고생하여 물려 준 싼하고 좋은 말 대신에 말라 비틀어진 말을 차지하고서 좋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애비를 두번씩이나 죽게 하는 人倫不容(인륜불용)의 天人共怒(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게 되거나 않았는지 새겨볼 일이다.

비단 사업자만이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출시설로 규제할 정도가 아닌 소규모의 기업체나 심지어 국민 각자가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 오염자인 것이며 마땅히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는 하수도료나 오물수거료는 이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특화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 각자는 세금의 형식으로 오염방지재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을 충분히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납세의 의무는 더욱 신성시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국민 개개인의 擔稅能力(납세능력)이나 기타의 여러가지 사유로 재원이 충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는 그 受託者(수탁자)로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준수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부득이 솔선하여 실천하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자세라도 견지하여야 한다.

□ 民間部門과 公共部門의 汚染防止投資

이것을 우리는 汚染者負擔原則에 근거하여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할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쉽게 사업자와 기타 비사업자의 環境汚染比率를 산정하고 그 投資推移를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 양자가 형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전체의 총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현상을 노출하게 될 것이며, 그 투자액이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환경파괴가 필연적이거나 경제운용상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것이다. 이 모두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適正水準에서의 民間部門環境投資와 公共部門環境投資의 衡平維持, 이것이 總和와 發展과 環境保全을 同時に 成就하는 요결이다.

UNEP(세계환경기구)의 어떤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바에 의하면 선진국(Developed Country)은 GNP의 0.5~1%를,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은 GNP의 0.1~0.5%를 環境投資額으로 設定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의 통계에 의하면 그들은 대체로 이 권장에 걸맞는 환경투자를 실행하는 것 같다. 나아가 환경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GNP의 1.3%가 환경투자로 활용될 때가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의 수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경에 남의 눈에 티는 보아도 재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거나, 똥 묻은 개가 재물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생활주변을 돌아보는 일이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에 물이나 전기를 무절제하게 낭비하지 않았는지, 물귀신 같이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변명의 구실만을 찾아 내세우지나 않았는지, 그러한 이웃을 홍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닳아가지나 않았는지, 피서지에 가보니 오물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고 비교적 좋은 곳을 골라 피서하고 즐기면서도 자기가 버린 오물은 내뺄개 치고 돌아오지나 않았는지, 그러고서도 피서지가 오물천지라고 핏대를 세우며 개탄하지나 않았는지, 汚染시켜 남주나? 다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자기 자녀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시절에 왜 진흙탕에 빠져서“팩팩”허우적대는 패지를 보고 마차에서 내려, 정장한 채로 끌어냈을까? 페스탈로찌가 왜 놀이터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주워 모았을까? 자기를 위해서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대로 지나치면 그날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그냥 지나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우리 같은 범인이 과거에는 수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부끄러워 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하기만 한다면.

흔히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없음을 한탄한다. 오염때문이라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 보기를 갈망하는 자여, 그 마음속의 도덕율이 더욱 크게 눈을 뜨도록 하라. 그러면 별뿐만이 아니라 후손의 건강한 미래도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칸트는 그의 저서에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자기 마음속의 도덕율을 同價値視하였나?

오염시켜 남주나? 하늘보고 침뱉기인 것을,

환경을 가꾸어 남주나? 그것이 우리것인 걸,

서울올림픽 잘 돼서 남주나? 코쟁이들 앞에서 마음껏 기를 펼 수 있는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을. *

會員入會案内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依據設立된 本協會는 定款의 定한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會員入會를 권장하오니 아직도 參與하지 않고있는 방지사설업체 또는 배출업체는 빠짐없이 자진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資格

- 가. 環境管理技師會員：國家技術資格을 취득한 環境管理技師 1, 2級 資格證所持者.
- 나. 排出業体会員：環境保全法 第15條의 規定에 依據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은 者.
- 다. 防止施設業体会員：環境保全法 第47條의 規定에 依據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
- 라. 産業廢棄物處理業体会員：環境保全法 第50條의 規定에 依據 廢棄物處理業許可를 받은 者.
- 마. 環境保全關聯事業体会員：防止機器類(防止藥品包含)製造 및 販賣業者와 建設業조경 等 其他 環境保全에 關聯된 事業体 또는 团体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은 者.
- 바. 特別會員：本會發展에 헌저한 功勳을 한 個人 또는 团体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은 者.
- 사. 名譽會員：社會指導層 人事.

●會員의 惠澤

- 가. 協會의 事業에서 얻은 調查研究 및 技術開發 結果를 利用 또는 活用할 수 있음.
- 나. 技術相談 提供
- 다. 海外 技術情報 提供
- 라. 技術教育 無料受講
- 마. 施工 設計, 研究調查 分析 評價 實費提供
- 바. 刊行物(環境保全協會報) 等 無料配付.

●入會節次

協會 所定樣式의 入會願書를 提出하여(入會費와 年會費를 同時納付하여야 함) 理事會의 同意를 받음으로서 入會됨.

●會 費

區 分	入會費	年會費	區 分	入會費	年會費
특별會員	10,000	15,000	防止施設業會員(上)	200,000	300,000
환경관리기사회원	2,000	4,500	(下)	100,000	150,000
排出業体会員(1種)	100,000	150,000	産業廢棄物處理業會員	100,000	150,000
(2種)	50,000	75,000	環境保全關聯事業會員	100,000	150,000
(3種)	30,000	45,000			

●入會願書 接受處

- 서울：本會事務局(中區小公洞111) 753-7640, 753-7669
- 京畿：京畿道支部事務局(水原商工會議所內) 6-1175
- 江原：江原道支部事務局(春川商工會議所內) 52-4321
- 忠北：忠北道支部事務局(淸州商工會議所內) 3-0023
- 忠南：忠南道支部事務局(大田商工會議所內) 22-6557~9
- 慶北：慶北道支部事務局(大邱商工會議所內) 73-2933
- 慶南：慶南道支部事務局(馬山商工會議所內) 93-1888
- 全北：全北道支部事務局(全州商工會議所內) 6-3011~5
- 全南：全南道支部事務局(光州商工會議所內) 2-6284~7
- 釜山：釜山支部事務局(釜山商工會議所內) 463-7801~5
- 濟州：濟州道支部事務局(濟州商工會議所內) 3-2164
- 仁川：仁川支部事務局(仁川商工會議所內) 75-1840

社 團 法 人 環 境 保 全 協 會